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388호, 2024.3.19. 일부개정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, 지적전산자료 이·활용 승인·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 등을 정하며, 범죄경력자 정보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측량업 등록, 지명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 제정(법률 제20341호, 2024. 2. 20)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(제41조)
- 나. 지적전산자료 이·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4936호, 2017. 10. 24.)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(안 제62조)
- 다. 연속지적도 관리·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제20388호, 2024. 3. 19.)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(안 제85조의2, 제85조의3, 제85조의4)
- 라.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선(안 제87조, 제88조의2)
- 마. 민감정보(범죄경력자료)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·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104조의2)
- 바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3847호, 2023. 11. 7.)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(별표13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

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- 전자우편 : song6186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40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(전화 (044) 201 - 3485, 팩스 044-201-55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